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1371호(2023.3.9.).
2. 우리 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및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형)로 확진되어 지자체,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의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치 >

발생/양성 확인 시 · 도

-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기 설정된 방역지역별 살처분, 이동제한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 발생농장 및 살처분 대상 가금 사육농장의 사육 가금 및 감수성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살처분 · 폐기 조치
 -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9695('22.12.10.)호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 살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분변 · 먼지 등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며, 야생조수류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의 선시행 후 실시
 -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적극 요청
- 발생 시 · 군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 · 운영
-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 소독 철저
 - * 종축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전통시장, 부화장, 식용란수집판매업,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장 등
- 방역대내 소규모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이행점검, 모니터링 검사 및 필요시 수매 도태 추진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일제 휴업 · 소독의 날"(매주) 준수 철저
 - * 차량 이동식 가금 판매 형태의 영업 포함
- 가금 사육농장 발생 시의 정밀검사 계획에 따른 검사주기 등 준수 철저(보호지역

내 농가 5일 주기검사 등)

-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추가 발생농장 중심 10km 내 모든 가금을 추가 검사하고,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대 예찰·검사 적용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PCR*)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 발생농장과 울타리 등으로 인접한 농장에 대해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련시설은 즉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
 - *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왕겨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GP),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등
 -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축산시설의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 발생농장과 울타리 등으로 인접한 농장에 대해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축산시설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이외 시·도

- 발생 시·군의 인접 시·군은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운영
- 발생 시·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 축산농장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매주) 준수 철저
 - * 차량 이동식 가금 판매 형태의 영업 포함
- 가금 사육농장 발생 시의 정밀검사 계획에 따른 검사주기 등 준수 철저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PCR*)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 ** 발생농장과 울타리 등으로 인접한 농장에 대해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련시설은 즉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환경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
 - *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왕겨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GP),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등
 -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축산시설의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발생농장과 울타리 등으로 인전한 농장에 대해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축산시설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유관부처 협조사항

- (국방부) 현장 방역인력 및 장비 지원 준비
- (환경부) 야생조류 AI 검사 및 철새도래 개체수 조사 정보 공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 (경찰청)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관련 현장 방역인력 협조 준비
- (질병관리청) 고위험군 차단방역 종사자(살처분, 매몰 등)에 대한 문진을 통해 질환 의심자 등은 살처분 참여를 배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보급 지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역학조사 결과 및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
- 발생농장은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부에 결과 보고
 - * (농장) 동물약품 보관용 냉장고, 난작, 축주신발, 퇴비사 등 / (차량) 차량바퀴, 운전석 매트 등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관련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보고 철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고병원성 AI 방역대 내 농가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14시까지 우리 부에 보고

□ 관련 단체(협회)

- 회원, 소속 계열사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1588-4060, 9060)토록 전파
-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 후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SMS(문자메시지) 발송, SNS 게재, 공문 시달 등 홍보 철저

□ 관할 및 소속 모든 농가에 대한 문자 발송 홍보(전국 지자체, 가금관련 협회)

- 현재 상황 전파, 검사결과 및 발생상황 등 단계별 문자를 발송하여 가금농장 내·외부 및 종사자에 대한 개인소독, 의심축에 대한 조기신고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철저' 홍보 실시

□ 해당 계열화 사업자(다솔)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 동일 계열 소속 도축장 AI 검사 강화(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간)

- (현행) 닭 10%, 오리 30% → (강화) 닭 20%(단, 토종닭 30%), 오리 60%
- 동일 계열 위탁 사육농가 가금 일제검사
 - (기간) '23.3.9. ~ '23.3.15.
 - (방법) 정밀검사(PCR)
 - (대상) 가금 축종별 정기 AI 검사일정을 가급적 준수하되, 일제 검사기간 중 해당농장에 대한 정기 AI 검사계획이 없는 경우 신속히 검사 실시
 - (결과보고) 관내 동일 계열 위탁사육농가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사 추진현황을 기재하여 매일 15시까지 우리부 AI 상황실로 제출

붙임 1. 고병원성 AI 확진 관련 공문 1부.

2. 해당 계열화사업자 위탁사육농가 목록 1부(별송). 끝.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행정안전부장관(기축질병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보건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기축질병방역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동물위생방역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한국관광공사사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국방부장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남권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장),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감염병대응과장),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감염병대응과장),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감염병대응과장),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감염병대응과장),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농촌진흥청장(기술보급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과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김석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	전결 2023.3.9.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 3. 9.)	접수		
2316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goodluck79@korea.kr / 대국민 공개